

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등에 관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와 국책사업, 교내에서 주관하는 교책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응역량을 높이고,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3.04.20)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② “대학평가”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
2.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정원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대학 평가
3.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

③ “국책사업”이란 정부부처 및 지자체(이하 ‘정부부처 등’)에서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대학 설립정신의 구현과 발전비전의 달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.

1. 학술연구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해당 사업의 유치에 따른 업적 인정은 교원업적 평가규정 시행세칙의 외부연구비수주 기준을 적용한다.
2. 연간사업비 5억 미만의 국책사업은 본 규정 제3장에 명시된 ‘업무분장 및 추진절차’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유치를 추진할 수 있으며, 사업 선정 후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본 규정에 따른 업적인정, 수당 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.
3. 산업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국책사업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 (신설 2022. 9. 1.)

④ “교책사업”이란 대학 설립정신의 구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책사업 준비 등을 위해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에 행·재정적 기여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. (신설 2023.04.20)

⑤ “국책사업 추진단(이하 ‘추진단’)”이란 국책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는 TF조직으로 국책사업관리위원회가 구성한다. (개정 2023.04.20)

⑥ “국책사업 추진부서(이하 ‘추진부서’)”란 추진단이 국책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, 대내외 협조, 추진단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, 사업단 작업공간 구축 및 지원과 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국책사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. 단, 위원회는 추진단에 추진부서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4.20)

⑦ “참여인력”은 대학평가 보고서 또는 국책사업 계획서 및 운영보고서 작성, 교책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추진단장, 실무총괄, 분과장, 위원을 말한다. (개정 2023.04.20)

제 2 장 국책사업관리위원회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22. 9. 1.)

-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문 할 수 있다.

제4조(업무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신규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
 - 2. 기존 사업의 재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
 - 3. 국책사업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
 - 4. 국책사업 추진부서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 - 5.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
 - 6. 참여인력에 대한 업적 인정,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
 - 7. 대응자금을 포함한 국책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- 8. 국책사업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 - 9. 국책사업(기타국책사업 포함) 사업단별 정기적 성과 점검 및 평가
 - 10. 국책사업 운영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
 - 11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②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처장의 요구와 위원장과 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·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.

-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개최한다.
 - 1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- 2.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공고에 의해 기획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7조(행정지원 및 간사)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담당하며,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(개정 2022. 9. 1.)

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의록은 생략한다.

제 3 장 업무분장 및 추진절차

제9조(업무분장)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② 기획처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22. 9. 1.)
 - 1.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관리 규정 관련 업무
 - 2. 국책사업관리위원회 행정지원 업무
 - 3.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학평가 관련 업무

- 4.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업무 (개정 2022. 9. 1.)
- 5.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득한 국책사업의 업적 인정, 수당 지급,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업무 (개정 2022. 9. 1.)
- ④ 기획처 기획예산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22. 9. 1.)
 - 1. 국책사업 사업공고 모니터링, 사업 공고문 대학 게시판 게시, 신규 국책사업 추진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
 - 2. 국책사업의 사업예산 및 대응자금 투자 타당성 검토 업무
 - 3.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득한 국책사업의 참여인력 구성에 관한 업무
- ⑤ 교무처 교무팀, 사무처 총무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득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별 업적 인정과 인센티브 반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22. 9. 1.)
- ⑥ 대학 각 부서는 부서업무와 관련성 높은 사업에 대한 사업공고 모니터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참여인력) ① 참여인력은 추진단장, 실무총괄, 분과장, 위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.

- ② 대학평가의 추진단장은 총장으로 한다.
- ③ 국책사업의 추진단장은 국책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부총장, 해당사업의 관련부서 처·실장 또는 역량이 있는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.
- ④ 교책사업의 추진단장은 해당사업의 관련 처·실장, 학장 또는 해당 교책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. (개정 2023.04.20)
- ⑤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. (개정 2023.04.20)
 - 1. 대학평가, 국책사업 또는 교책사업의 추진 총괄
 - 2. 실무총괄, 분과장, 위원 추천
 - 3. 참여인력별 참여등급(안) 작성
- ⑥ 실무총괄, 분과장은 해당사업 관련 부서의 처·실장, 부처장, 팀장 또는 사업 선정 시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, 직원으로 정한다. (개정 2023.04.20)
- ⑦ 위원은 해당사업 관련 부서의 처·실장, 부처장, 팀장, 직원 또는 사업 선정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, 직원으로 정한다. (개정 2023.04.20)
- ⑧ 참여인력은 기획처 내부결재에 의해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, 위촉된 이후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촉할 수 있다.(교책사업 제외) (개정 2022. 9. 1., 2023.04.20)

제11조(추진절차)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.

- ① 대학 각 부서와 기획처는 국책사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.
- ② 국책사업의 사업공고 공문을 접수하거나 사업 공고게시물을 확인한 부서는 즉시 기획처 기획예산팀에 통보한다. (개정 2022. 9. 1.)
- ③ 기획처장은 해당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(별도양식)을 작성할 부서를 지정하고, 해당 부서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.
- ④ 기획처장은 제출된 「국책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」를 검토하고 기대효과가 높을 경우 국책사업관리 위원회를 소집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, 추진단 구성안, 추진부서 및 사업추진 예산안을 보고한다. 단, 기획처장은 기대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국책사업 추진을 보류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국책사업위원회는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심의·의결하며,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·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.

제 4 장 업적 인정 및 인센티브

제12조(참여등급) ① 추진단의 참여등급은 사업추진단장, 실무총괄위원 및 위원 S, A, B, C로 총 6등급으로 분류하며, 업적 인정, 수당 지급,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한다.

가. 사업추진단장 : 기준값의 120%

나. 실무총괄위원 : 기준값의 110%

다. 위원 : S등급(기준값, 100%), A등급(기준값의 80%), B등급(기준값의 50%), C등급(기준값의 20%)

② 사업추진단장은 실무총괄과 협의하여 참여인력별 역할의 중요도 및 난이도, 참여기간을 고려하여 참여인력별 참여등급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. 단, 추진단장은 개별위원의 등급에 따른 업적점수와 수당을 상향하여 부여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9. 1.)

③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참여등급을 확정한다. 단, 위원회에서는 참여인력별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사업의 대학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등급안을 가감할 수 있다.

제13조(업적 인정) ① 참여인력의 업적 인정 기준은 <별표1>에 따른다. (개정 2022. 9. 1.)

② 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점수를 최대 30%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단, 국책사업의 경우 <별표2> 평가에 따른다. (개정 2022. 9. 1.)

③ 직원 참여인력의 참여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한다.

④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인사평가시 코어를 포함한 모든 기준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.

⑤ 참여인력의 업적점수는 해당 교원의 의사에 따라 연구, 산학협력 또는 봉사분야 점수로 부여한다. (개정 2022. 9. 1.)

⑥ <삭제 2022. 9. 1.>

제14조(수당 지급) ① 해당 대학평가, 국책사업 또는 교책사업 추진을 통한 대학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·의결할 수 있으며, 총장의 승인을 거쳐 참여인력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4.20)

② 참여인력의 수당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(개정 2022. 9. 1.)

③ 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, 국책사업 또는 교책사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최대 30%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, 참여도가 낮은 경우(C등급)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 단, 국책사업의 경우 <별표2> 평가에 따른다. (개정 2022. 9. 1., 2023. 4. 20)

④ 제13조에 따라 업적점수가 부여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5조(인센티브) ① 대학평가 결과 목표성과를 달성한 경우 또는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에 미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적 및 수당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여부 및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. (개정 2022. 9. 1.)

② 인센티브는 업적 인정 또는 수당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두 가지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제14조 ②항에 따른다.

제16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한다.

② 본 규정은 2019학년도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학평가와 국책사업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 5. 1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「국책사업관리위원회 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4. 2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신설 2022.09.01.)

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업적점수 기준

- 업적점수는 해당 교원 의사에 따라 연구, 산학협력 또는 봉사점수로 부여하고 인사평가지 코어를 포함한 모든 기준점수를 대체할 수 있으며, 직원의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함
- 추진단장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추진단장, 실무총괄, S등급 위원에 대해 업적점수 기준에서 200%까지, 그 외 등급 위원에 대해서 30%까지 상향 추천(추천서 제출)할 수 있음. 단, 총 상한점수 범위내 가능하며 반영여부는 위원회 심의·의결로 정함
-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국책사업의 경우, 총 상한점수를 초과할 수 있음

▪ 대학평가

구분	기준 점수	참여등급별 업적점수					
		추진단장 (120%)	실무총괄 (110%)	S (100%)	A (80%)	B (50%)	C (20%)
대학기본역량진단	250	300	275	250	200	125	50
대학기관평가인증	200	240	220	200	160	100	40

▪ 국책사업 신규 지원 및 유치

구분 (연간사업비규모)	기준 점수	참여등급별 업적점수						총 상한점수
		추진단장 (120%)	실무총괄 (110%)	S (100%)	A (80%)	B (50%)	C (20%)	
40억원 이상	250	300	275	250	200	125	50	4,000
30억원 이상~40억원 미만	200	240	220	200	160	100	40	3,000
20억원 이상~30억원 미만	150	180	165	150	120	75	30	2,000
10억원 이상~20억원 미만	120	144	132	120	96	60	24	1,000
5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100	120	110	100	80	50	20	700
5억원 미만	80	96	88	80	64	40	16	500

▪ 국책사업 운영

구분 (연간사업비규모)	기준 점수	참여등급별 업적점수						총 상한점수
		추진단장 (120%)	실무총괄 (110%)	S (100%)	A (80%)	B (50%)	C (20%)	
40억원 이상	200	240	220	200	160	100	40	3,500
30억원 이상~40억원 미만	150	180	165	150	120	75	30	2,500
20억원 이상~30억원 미만	120	144	132	120	96	60	24	1,500
10억원 이상~20억원 미만	100	120	110	100	80	50	20	900
5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80	96	88	80	64	40	16	600
5억원 미만	60	72	66	60	48	30	12	400

※ 국책사업 운영의 경우, 참여등급별 점수에서 4 : 6 비율로 나누어 학기 단위로 업적점수 부여
 - 비율적용 4(사업기간의 상반기 운영) : 6(사업기간의 하반기 운영)

[별표2] (신설 2022.09.01.)

국책사업 대학발전 기여도 평가기준

1. 평가표

평가준거	배점		평가내용
	유치	운영	
대학 발전계획(정책) 정합성	40	30	□ 국책사업의 취지 및 목표가 대학 발전계획(정책)에 부합하는가 □ 국책사업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이 대학 발전계획(정책)과 부합하는가
대학 재정 기여도	30	30	□ 국책사업이 대학 재정 운영에 실제적인 기여가 있는가 □ 국책사업을 통해 기존 대학재정 지출 대체가 많이 되는가 □ 국책사업단에서 대학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가
대학 브랜드 기여도	30	20	□ 국책사업 유치와 운영을 통해 대학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는가
사업성과 평가 결과	-	20	□ 연차별 사업평가 결과(등급)과 우수한가
계	100	100	

2. 평가등급 : 6단계 정성평가

평가등급	평가점수	업적점수/수당	평가등급	평가점수	업적점수/수당
S	90점 이상	+ 30%	C	60점 이상~70점 미만	- 10%
A	80점 이상~90점 미만	+ 20%	D	50점 이상~60점 미만	- 20%
B	70점 이상~80점 미만	+ 10%	E	40점 이상~50점 이상	- 30%